

※ 수취체제(부세제도) ※

고 려		조 선 초 기 (15세기)	조 선 중 기 (16세기)	조 선 후 기 (17세기 ~ 19세기)
租 (조: 전세 = 조세)	1) 역분전(태조) ① 경기도만 지급 ② 무신의 우대 ③ 1/10	· 과전법(공양왕 ~ 조선전기) → 조세제도: 담합손실법(태종) → 연분 9 등법(세종) → 면세지의 증가 → 영정법(인조, 1635년): 조선후기의 전세제도 ① 주체: 혁명파 사대부(정도전, 조준 등) ① 수확량을 당사 후 결정 ① 공방상정소에서 주관 ① 국방전, 관둔전, 진황지 ①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의 징수(전세의 일원화) ② 목적: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② 잡세의 부과 ② 풍년과 흉년이 기준 ② 수세지의 감소 ② 결과 ② 전세비율의 감소 → 지주와 자영농민의 부담 감소 ↳ 토지제도의 모순 해결 ↳ 답험의 비용 ③ 1결당 최고 20두 ③ 조선후기: 토지 결수의 증가와 ↳ 대다수의 농민(전호 = 소작농)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↳ 국가재정기반의 확보 ↳ 관리의 농간 ~ 최하 4두 국가 수입이 일치하지 않음 ↳ 오히려 부담의 증가(원인: 각종 부과세의 징수)		
	2) 전시과: 무신정권 때 붕괴	③ 현직, 전직관리에게 지급 → 양전제도: 전분 6 등법(수응이척법, 세종) → 양척등일법(효종) → 목적: 구제야 세력의 무마 ① 전제상정소에서 주관 ① 전분 6 등법의 적용 ④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 ②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면적을 6등급으로 구분 ② 토지측량술의 발전 → 실제로는 일부가 수신전, 휴양전 ③ 양안에 기록(20년마다)		
	3) 녹과전(원종) : 경기 8현에 지급	→ 토지제도: 직전법(세조) → 관수관급제(성종) → 직전법의 폐지(명종)		
전 시 과	과 전 법	① 배경: 토지(과전)의 부족 ① 배경: 양반관료의 수조권 남용 ① 배경: 양반지주를 중심으로 토지의 소유가 편중됨 ※ 조선후기의 수취체제		
현직관리에게만 지급	현직과 전직관리에게 지급	② 현직관리에게만 지급 ② 현물 녹봉 ② 내용: 수조권의 지급 폐지, 녹봉만 지급 1) 조세의 (일부) 전세화		
전국적	경기도 → 중앙집권과 국가재정의 확보	③ 경기도, 수조권의 지급 ③ 결과 ③ 결과 ③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 2) 토지 결 수에 따라 징수		
전지와 시지의 지급	전지만 지급	④ 수신전, 휴양전의 폐지 ↳ 관리의 토지소유 욕구를 자극 ④ 결과 ④ 공전과 사전의 구분이 없음 ↳ 지주 전호제의 일반화 ② 농지 1결 당 총 조세액의 증가(20.2 두)		
농민의 경작권이 보장되지 않음	경작권의 보장(공전에 한하여)	⑤ 결과: 집권체제의 강화 ↳ 공전과 사전의 구분이 없음 ↳ 농장의 급진전 토지의 지배권이 강함 ↳ 병작반수제의 강화 ③ 조세의 (일부) 금납화		
외역전의 지급(향리)	외역전의 폐지	⑥ 폐단: 현직 관리에 의한 ④ 의의: 국가에 의한 토지의 지배권이 강함 ↳ 농장의 급진전 토지의 지배권이 강함 ↳ 병작반수제의 강화 ④ 성격: 농민의 부담은 줄이고 부담대상자는 늘림		
과전(1/10), 공음전(½), 공신전(½)	병작반수의 금지 → 1/10(1결당 30두)			
군인전은 중앙군에게 지급	군전은 한량(閑良)에게 지급			
관리가 수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음	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			
· 토지국유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유지(민전)의 인정 · 관리에게 수조권의 지급 ·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(18 관등) ·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도 있음				
庸 (용: 군역, 부여 = 요역)	· 원칙: 국민개병제	1) 군역 ① 양민개병제(현직관리와 학생은 면제), 농병일치제 ② 보법의 제정(세조) → 군역의 요역화 → 대립의 성행 → 양성화: 방군수포제(중종) → 군적수포제(중종) → 양역변통론(현종 ~ 숙종) → 균역법(영조, 18세기) → 호포법(대원군, 19세기) ↳ 정군(정병): 현역, 양인으로 구성 ① 군사제도의 붕괴 ① 현역 복무를 군포로 대신 ① 유형원: 농병일치 ① 주관: 균역청 ↳ 보인(봉족): 정군의 경비 보조(조역가) ② 군대의 질적 저하 ② 양반의 군포 면제 ② 영조: 호포론 ② 내용 2) 요역: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③ 국방력의 약화 ③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확실 ↳ 양반의 반대로 실패 ↳ 대원군 때 실시 ↳ 농민의 1년에 군포 1필을 부담 ↳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④ 농민의 부담 증가 ④ 대원군 때 실시 ↳ 농민의 부담 감소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가중 (결작의 부담이 소작농에게 전가, 군적의 문란) ↳ 양반, 지주의 부담 증가 ↳ 동원하고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 ⑤ 군포의 징수제 확산 ↳ 국가 수입은 증가하지 않음 ↳ 농민의 부담은 줄이고 부담대상자는 늘림		
調 (조: 공납) · 농민의 집집(가호, 민호)마다 토산물(공물, 현물)로 징수 · 농수산물 · 광산물	① 구분 ① 상공: 매년 징수 ↳ 별공: 수시로 징수 ② 향리가 징수 ③ 조세보다 농민의 부담이 큼	· 공납(15세기) → 방납(16세기) → 개혁의 제시(16세기) → 대동법(17세기) ① 구분 ① 중앙관청의 서리들이 ① 조광조: 수미법 ① 주관: 선혜청 ① 상공: 정기적으로 호조에 납부 공물의 대납 ② 이 이: 대공수미법 ② 실시과정 ↳ 별공: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수 ② 농민의 부담 중에서 가장 큰 폐단 ③ 유성룡: 공물작미의 ↳ 경기도(광해군): 이원익, 한백겸 ↳ 진상: 지방관이 상납(한달에 1 번) ↳ 가장 큰 폐단 ↳ 강원도(인조): 조익 ② 징수방법: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 ↳ 농민의 도망 ↳ 충청도, 전라도(효종): 김육 ↳ 군현은 가호에 할당 ↳ 인징, 즉징 ↳ 경상도(숙종): 허적 ↳ 군현은 가호에 할당 ↳ 유망농민의 급증 ↳ 전국적(18세기): 1결당 12두 ↳ 전국의 결 수(토지의 면적)에 따라 징수 ↳ [농민의 집집마다 부과하던 방식을 @ 지주의 부담 증가 ↳ 현물 징수의 존속(별공, 진상) ↳ 농토의 결 수(토지의 면적)에 따라 징수 ↳ 농토의 결 수(토지의 면적)에 따라 징수 ↳ 상남미의 비율 증가, 유치미의 비율 감소 ↳ ④ 잉류지역: 함경도, 평안도, 제주도는 제외 ↳ 공납의 전세화, 금납화 ↳ ⑤ 특징: 토산물을 징수하던 것을 쌀, 삼베, 무명, 동전으로 징수		